

터키 무역장벽의 특징 및 현황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있어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뿐만 아니라 터키 표준규격승인(TSE)을 추가로 요구해 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1일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월별 수출입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바, 2013년 5~10월간 한국의 대 터키 수출은 29.6억 달러로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6.2% 증가하고, 대 터키 수입도 3.32억 달러로서 9.9% 증가하였다.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한국의 대 터키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차량부속품, 승용차, 불도저, 철강, 선박 등이며,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석유제품, 의약품, 엔진부품, 가방류, 어육, 의류, 담배, 차량부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는 6.5% 관세 즉시 철폐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합성수지와 화학제품은 터키의 자력 공급이 어려운 부문으로 동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도 국제적 차이가 낮지만, 대규모 거래로 인해 작은 관세 인하폭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가정용은 품목별로 호부진의 차이가 많아 관세인하 보다는 현지 시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가격 민감성이 큰 전자부품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큰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등은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후 6개월만의 자료로 전반적인 영향 분석은 어려

움이 있으나, 중간재, 원료, 부품 등은 가격민감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소비재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높지 않아 연차적으로 관세 인하폭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 7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실질 타결되고 9월에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기술규격승인(TSE)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있어 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뿐만 아니라 터키 표준규격승인(TSE)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TSE를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은 Red Line¹⁾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바이어와의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고, 정유공장, 공항, 항만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자만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터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관광가이드는 약 120여 명으로, 통역사 자격으로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한 터키 국적자를 대동해야만 가이드 활동이 가능해, 현지 비자발급, 노동허가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2014년 기준(1월~11월) 터키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213,645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키인 관광객(20,874명)보다 10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터키 내에서 한국인 관광가이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청과 산업부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타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인데,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청과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년 9월 노동부로 일원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였으나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키인 5명 고용원칙’에 따른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탄 경우, ②터키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터키는 국내산업 보호 및 수입 억제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HS Code 3907.60.20)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2014.10.31)한 바 있다.²⁾

1)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2) 터키경제부의 2014.10.31일자 관보(제29161호, 통지문 No.2014/6911)참조 상기 관보에 따르면 동 조치는 2014.1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씩 관세율로 총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